

정 정 신 고

2018년 3월 30일

■집합투자기구 명칭 :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(주식)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0년 1월 7일
3. 정정사유 : 환매수수료 폐지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
4. 정정사항

투자신탁명	변경일
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(주식)	2018-3-30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설명서	작성기준 일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	[금융위원회 귀중] 2018년 3월 16일 [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 성기준일] 2018년 3월 5일	[금융위원회 귀중] 2018년 3월 30일 [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] 2018년 3월 19일
[간이투자설명서]			
Ⅰ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환매수수 료 폐지	효력발생일 2018년 3월 C1 환매수수료	효력발생일 2018년 3월 30일 C1 환매수수료 <삭제>
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(1)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	환매수수 료 폐지	[성명] 김상우 [생년] 1968 [직위] 상무 [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수] 11개 [다른 운용자산 규모] 487억 [작성기준일] 2018.3.5	[성명] 김상우 [생년] 1968 [직위] 상무 [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수] 11개 [다른 운용자산 규모] 483억 [작성기준일] 2018.3.19
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2. 전환절차 및 방법	환매수수 료 폐지	- 판매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매수수 료 징구하지 않음. 1.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 여 환매청구하는 경우	<삭제>

		2. 수익증권 전환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(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.)	
[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]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	<추가>	2018.03.30 환매수수료 폐지
5. 투자운용인력 가. 책임투자운용인력	환매수수료 폐지	[성명] 김상우 [생년] 1968 [직위] 상무 [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] 11 개 [다른 운용자산 규모] 487 억 [작성기준일] 2018.3.5	[성명] 김상우 [생년] 1968 [직위] 상무 [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] 11 개 [다른 운용자산 규모] 483 억 [작성기준일] 2018.3.19
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폐지	이 집합투자기구는 (생략)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해당 사항 없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환매수수료 폐지	다만, 다만, 판매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지 아니합니다.	<삭제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환매수수료 폐지	수수료율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	수수료율 환매수수료 없음